

경기위원회(심판위원회 포함) 규정

2006. 2. 16.



[사]대한근대5종연맹

경기위원회(심판위원회 포함) 규정

2006. 2. 16. 정기이사회 제정
2013. 5. 21. 임시이사회 개정
2014. 2. 13. 정기이사회 개정
2018. 12. 5. 임시이사회 개정
2021. 8. 27. 정기이사회 개정
2023. 2. 3. 정기이사회 개정

제1조(근거) (근거 및 명칭)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본연맹”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 규정은 원활한 대회 및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대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 운영에 관한 업무
2. 경기일정 및 심판배정에 관한 업무
3. 심판의 양성에 관한 업무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1인
2. 부위원장 : 2인 (심판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3. 위 원 : 약간인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여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의 전날이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과 친족관계인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인 특성을 반영하여, 1개 위원회 범위내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50%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⑥ 정관 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심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설치.운영하며 구성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 원 장 : 1인(경기위원회 부위원장 겸임가능)

2. 부위원장 : 1인(경기위원회 부위원장 겸임가능)

3. 위 원 : 약간인(경기위원회 위원 겸임가능)

4. 경기인(전국대회 3위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심판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2. 3.>

⑤ 경기 운영 및 심판 배정은 국제근대5종연맹 경기규정에 따라 정하며, 대회 운영메뉴얼을 세칙으로 하여 경기를 운영한다.

제6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 연맹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부 칙<2006. 2. 16>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2016. 2.16)

부 칙<2013. 5. 21>

제1조(경기운영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운영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2013. 5. 21.)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